



‘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’

전 남 지 방 우 정 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주52시간 초과근로 분석 및 관리방안 알림

1. 관련

가. 인력계획과-4855(2018.6.27.,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알림)

나. 우편정책과-1562(2018.6.25.,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장근로 단축대책)

2.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2018. 7. 1. 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까지의 초과근로 실태를 분석하여 통보하니, 각 국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52시간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(공무원)주52시간 초과자 현황(2018년 상반기)

(단위 : 명, %)

구 분	행정	창구	집배	소통	소포실	특수발착 (우체국)	특수발착 (집중국)	설비	계
총 인원수	323	1,234	1,281	65	58	45	57	39	3,102
주52시간초과 인원(주 누계)	198	235	4,839	213	147	275	7	11	5,925
주당 평균 초과인원	8	9	186	8	6	11			228
점유비	3.5	3.9	81.6	3.5	2.6	4.9			100.0

나. (공무원)월별 주52시간 초과근로 인원(2018년 상반기)

(단위 : 명)

구 분	행정	창구	집배	소통	소포실	특수발착 (우)	특수발착 (집)	설비	계
2018. 1월 주 평균	6	3	275	5	3	9			301
2018. 2월 주 평균	20	21	432	15	14	17	1	2	521
2018. 3월 주 평균	1		132	4	2	7			146
2018. 4월 주 평균	1	10	37	5	6	9			67
2018. 5월 주 평균	4	14	169	8	6	10			210
2018. 6월 주 평균	14	4	46	13	2	11	1	1	92
상반기 주 평균	8	9	186	8	6	11			228

- 1/4분기 설(2.16.) 특별소통기간 초과근로인원 : 521명(1/4분기 초과인원의 53.8%)

- 2/4분기 지방선거(6.13.) 특별소통기간 초과근로인원 : 245명(2/4분기 초과인원의 66.3%)

다. (비공무원)월별 주당 52시간 초과근로 인원(2018년 상반기) (단위 : 명)

구 분	상시집배	실무원 (우체국)	실무원 (집중국)	택배원	특수지	계
인원수	143	50	352	22	112	679
2018. 1월 주 평균	37		2	5		45
2018. 2월 주 평균	58		9	8		75
2018. 3월 주 평균	22		4	6		31
2018. 4월 주 평균	5		9	6		20
2018. 5월 주 평균	25		4	4		33
2018. 6월 주 평균	6		6	1		12
상반기 주 평균	25		6	5		36

- 상시계약집배원의 초과근로가 가장 많음(2월 설 소통, 5~6월 지방선거 소통)
- 실무원(집중국)과 택배원은 주 평균 5~6명씩 초과근로 발생

라. 2018년 초과근로 분석결과

- (업무분야별) 대다수 초과근로가 집배업무에서 발생(1,281명 중 186명)
 - 행정업무(323명)는 주당 평균 8명이 초과근로하고 있음
 - 창구업무(1,231명)는 소수 인원인 9명의 초과근로가 발생함
 - 소통·특수발착업무(102명) 중 19명이 초과근로하고 있음
- (관서별) 4급국(광주권 > 전남권), 집중국, 5급국 순으로 초과근로가 많음
- (비공무원) 상시계약집배원 25명, 집중국실무원·택배원이 5~6명 발생

마. 초과근로 관리방안

- (근로시간 유연화) 업무량 편중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확대
- (과다 초과근로자 관리) 책임직은 개인별 주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단위 초과근로시간 확인 및 과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분산 등 업무량 평준화로 초과근로 감축
- (직원 인식 제고) 책임직부터 직원들이 정시 퇴근할 수 있는 우체국 근무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연장근로 마인드 변화 유도
- (관행적인 출퇴근등록 지양) 불필요한 조기출근 및 지연퇴근 지양

바. 관리 부서(국)별 역할 분담

- (운영지원과) 정규직·비공무원 주52시간 초과근로 총괄 관리
- (인력계획과) 비공무원 주52시간 초과근로 관리
- (우편물류과) 집배 및 집중국 초과근로 감소방안 추진
- (우편영업과) 택배원 초과근로 감소방안 추진
- (총괄국,집중국)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발생치 않도록 개인별 관리

3. 아울러, 초과근무 관리 부서(국)에서는 초과근무 발생 현황 및 주52시간 이내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18. 7. 10.(화)까지 보고(통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보고(통보) 부서(국) : 우편물류과, 우편영업과, 총괄국, 집중국

나. 보고내용 : 붙임 서식

- 붙임 1.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초과근로 분석 1부
2.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로 현황 및 해소방안(보고서식) 1부. 끝.

전남지방우정청장



수신자 전남지방우정청 각 과장, 총괄국장, 우편집중국장

주무관	유상호	운영지원과장	김종명	사업지원국장	이동호	청장	07/06 정진용
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

협조자 우편물류과장 **代김담호** 우편영업과장 배수권

시행 운영지원과-5736 (2018.07.06.) 접수 ()

☎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/ www.koreapost.go.kr/jn/
전화 [062-600-4654](tel:062-600-4654) /전송 062-385-5724 / yuland.koreapost.go.kr / 공개